

의안번호

제841호

##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- 검토보고서 -

### 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11. 8. 25(목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11. 08. 30(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11. 09. 05(월)

### 2. 제정이유

-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디자인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이미지를 창출하여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도시디자인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, 2조)
-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위한 구청과 구민의 책무(안 제3조)
- 도시디자인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개선·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
- 도시디자인 사업시행 등(안 제8조)
- 필요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안의 공모선정(안 제9조)
-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12, 13조)

4. 근거법령 : 「경관법」 및 「울산광역시 경관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·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
  
-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
  - 도시디자인 부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, 그에 대한 실행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으며
  - 또한,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야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,
  -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정, 자문을 얻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음.
  
- 우리 중구가 구도심 저개발지역으로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도시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, 울산시 관내 남구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,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
  
- 다만, 최근 이 조례와 관련하여 도시디자인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그 직의 역할과 조례안 제10조의 사업추진협의체와 제12조의 도시디자인위원회 역할이 이중성이 있다고 보는데 각각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.